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평창종합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의 안 번 호	331

제안연월일 : 2021. 3.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2021년 2월 15일 설립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창군종합운동장 내 선수대기실 2(구 교육체육과 사무실)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무상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치 : 평창읍 종부로 69-27(종부리 596-3), 평창종합운동장

나. 사용기관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다. 사용목적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활용

라. 사용기간 : 2021. 4. 1. ~ 2026. 1. 31.(5년)

마. 재산내역

재산의 표시					비고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구조	면적(㎡)	
평창읍 종부리	596-3	건물	합계	124.43	
			철근콘크리트	124.43	선수대기실 2 (구 교육체육과 사무실)

3.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나. 「공유재상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 현장사진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3. 생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